

泰村 高尙顏의 〈叢話〉考察

權 泰 乙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世敎의 警戒性 |
| II. 본 말 | 3) 傳記의 褒貶性 |
| 1. 著 者 | 4) 濟世의 批判性 |
| 2. 〈叢話〉의 著述 및 體裁 | III. 맺는 말 |
| 3. 〈叢話〉의 性格 | —泰村 童話의 意義를 檢해— |
| 1) 實事求是의 實證性 | |

I. 머 리 말

泰村 高尙顏(1553~1623)은 尙州 출신의 實學者요 官吏며 文人이었다. 지금까지 泰村은 〈農家月令〉의 저자로 학계에 소개된 바는 있으나¹⁾, 實學者 泰村으로서 그의 문학작품 중 백미라 일컬을 수 있는 「泰村集」²⁾

-
- 1) 〈農家月令〉에 대한 연구는, 洪在然教授가 발표한 〈農家月令歌의 作者에 대한 警見〉(어문학 4집, 어문학회, 대구, 1959)과 〈農家月令攷〉(東洋文化 第6・7輯, 嶺南大附設 東洋文化研究所, 대구, 1968)가 있으며, 이 두 논문의 주제는 〈農家月令〉과 〈農家月令歌〉의 作者 辨證에 있었고, 그 논의 가운데서 〈叢話〉의 몇 일화가 논증의 자료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 2) 「泰村集」은 全六卷 三冊으로 1898년에 간행되었다. 卷1은 賦와 詩로 90餘題, 卷2는 詩(13題), 輓詞(14題), 箋(2편), 書(6편)를, 卷3은 書(9편), 序(2편), 記(2편), 贊(1편), 說(1편), 上樛文・策題・奉安文 등이 각 2편, 祭文(7편), 碑銘(2편), 雜著(7편) 등이며 卷4와 5는 效顰雜記 上下요 卷6은 附錄이다. 병화와 화제로 일실한 작품이 많아 분량면에서는 적은 편이다.

卷三·四·五의 《雜著》 및 《效顰雜記上下》에 수록된 〈叢話〉 192話에 대한 고찰은 없었다.³⁾

조선조 후기 실학을 經世致用·利用厚生·實事求是派의 단계로 전개되었다⁴⁾고 볼 때에, 泰村은 이들보다 앞서 이 세 파의 실학을 종합적으로 드러내 보인 조선 중기의 실학자로, 실학의 선구로 보는 李晬光(1563~1628)이나 柳馨遠(1622~1673)들보다도 먼저〈叢話〉 192話를 통해 그의 실학사상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泰村의 〈叢話〉는, 저자가 稗官의 입장에서 濟世安民의 儒家理念을 文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저술되었거니와 이들 叢話는 實學을 바탕으로 한 記錄文學⁵⁾으로서 뿐 아니라 隨筆·童話로서의 순수 문학성을 띤 일화들로 이루어졌다.

본 고찰은, 泰村 〈叢話〉를 학계에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저자의 저술 목적의식을 作家意識으로 보아, 이 작가의식이 그의 〈叢話〉에서는 어떤 性格面을 띠는가를 살피는 가운데 泰村의 실학자적 면모도 부각시키고자 한다. 작가의식면에서 〈叢話〉 192話를 획일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짓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첫째, 실증적·고증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고 본질에 가깝도록 해석·평가하여 그 실상을 보이거나 문제를 제기한 實事求是의 實證性이 두드러진 일화들과 둘째, 세상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 경계하고 깨우침에 주안점을 둔 世敎的 警戒性을 띤 일화들과 셋째, 한 인간의 행적 중 특정의 것을 부각시켜 그것을 褒揚하거나 貶斥함으로써 후세의 거울을 삼고자

3) 《效顰雜記》가 19세기 후반에 발간된 「稗林」第七輯에 수록되었으나 그 가치성에 대한 고찰은 없었음.

4) 李佑成, 《實學研究序說》, 「實學研究入門」, 一潮閣, 1982. p.15에서, 조선 후기의 실학 전개과정을 제1기 經世致用派(유형원·이익), 제2기 利用厚生派(박지원), 제3기 實學求是派(김정희)등으로 파악하였다.

5) 廣義의 文學을 지칭한. 이 속에는 逸事와 逸話의 두 유형의 이야기가 주류이나 앞으로 逸話로 지칭한다.

한 傳記的 褒貶性이 두드러진 일화들과 넷째, 세상을 보다 향상시킬 목적으로 儒家理念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으로써 인간과 사회를 비판한 濟世的 批判性을 띤 逸話群으로 대분하였다.

본론에서는, 먼저 저자에 대해 간략한 소개와 〈叢話〉의 저작 연대 및 체재와 내용, 목적을 살피고 작가의식면로 분류한 네 성격을 작품을 통해 규명하도록 한다. 특히, 〈叢話〉 192話 가운데는 兒童을 독자로 의식한 逸話와 童話가 50여 話⁶⁾나 되어 이들의 의의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종합 정리하기로 한다.

II. 본 말

1. 著 者

저자의 생애는 「泰村集」 卷6의 〈行狀〉(權相一撰)과 〈墓碣銘〉(李光庭撰)을 비롯해 〈行年記〉(孫子世章撰)등을 종합하면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高尙顔의 字는 思勿이요 泰村은 그 號며, 父佑(贈漢城右尹)와 母信川康氏의 아들로 1553년(明宗8年) 尙州牧 屬縣인 龍宮縣 旺泰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오하고 독서를 좋아하였으며, 7세에는 白石姜霽(官正郎)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 때에 이미 能綴文詞하여, 하루는 스승과 강변을 거닐다가 스승이 자갈을 가리키며 “흰돌은 천년이 가도 흰돌이요”(白石千年白)라 읊고는 제자에게 댓구하라 하니, “긴 강물은 만고에도 끊임없네”(長江萬古長)라고 응대하였다. 스승은 이에 놀라 “이 아이는 반드시 나라빛낼 큰 문장가가 되리라”(是子必爲華國大手)고

6) 泰村의 〈叢話〉 가운데는 아동을 독자로 의식한 일화가 42편, 童話가 11편이 되어 총 53話가 童話 내지 童話의 逸話다.

칭찬하였으며, 이로부터 泰村의 文名은 원근으로 번져갔고 白石亭 原韻까지 인구에 회자되었다.⁷⁾ 15세에는 벌써 文詞와 筆法이 老成한 수준에 이르러 文士들 사이에 두각이 드러났으며 그해 夏課에는 嶺南의 으뜸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20세에 進士初試에 응시하였다가 科場의 선비들로부터 간교한 질서를 받음으로써 仕宦에의 험난을 예측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벼슬에 적극성을 띠어서는 안 되리란 생각을 굳히었다. 21세에 進士試에 급제하였고 1574년 24세에는 文科에 올랐다. 25세에 一善(現善山) 訓導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랐으나 正郎을 비롯한 內職에 있었던 기간은 극히 짧고, 주로 자원하여 察訪·縣監·郡守 등의 外方末職이 거의었다.

29세 咸昌縣監時는 潁江에 汙를 쌓아 灌溉水利에 큰 덕을 베풀어 永世不忘碑가 있고, 40세에는 임란을 당하여 尙州 咸昌 선비들의 추대로 義兵將이 되어 救國隊列에 앞장섰으며, 42세에 三嘉縣監이 되어서는 統營에서 실시한 舟師試에 李忠武公과 더불어 試官(文官資格)이 되어 보름간 머무는 동안 의기상합하여 酬唱함도 많았다. 丁酉再亂時는 喪中에 있었으나 적개심을 이기지 못해 왜적 방어책 八條를 지어 西厓 柳成龍에게 바치어 채택된 바가 많았으며, 향리의 여러 선비들과는 합심하여 퇴락한 儒風을 진작시키는데도 진력하였다. 49세, 知禮縣監時에도 학교를 부흥시키고 農桑을 권장하여 현민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이후 咸陽郡守 蔚山判官을 거쳐 豐基郡守로 용퇴할 때까지 전후의 황폐한 農桑復興과 민심안정 및 퇴폐한 풍속을 바로 잡는 데 혼신의 노력을 쏟았다. 특히, 權貴의 상관일지라도 부당한 처사에는 持節을 굽히지 않았던 일화들을 <叢話>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56세 되던 1608년에 宣朝가 승하하고 光海가 즉위하자 세상이 장차

7) 白石亭 原韻은 「嶺南樓亭詩集」에 실렸는데, “欲跡紅塵外/開亭碧樹傍/逍遙有樂地/漁釣送頽光/白石千年白/長江萬古長/紛紛名利者/應笑此清狂”이라 완성하였다.

어지러워 질 조짐을 보고 現 店村邑 興德里 禮洞 盤石上에다 南石亭을 짓고 만년의 藏修地로 삼았으며 이듬해(1609년·광해원년)에는 벼슬을 버리고 南石亭으로 은퇴하였다. 이곳에서 同志士友로 더불어 講磨하는 여가에 산수를 소요하며 음영하였으며 59세(1610년)에는 세상이 더욱 어지러워짐을 보고⁸⁾ 現 山北面의 草洞 벽촌으로 가족을 이끌고 깊이 숨어 버렸다. 泰村은 당시의 생활을 “깊이 초동의 발두둑에 숨어 /한가로이 창에 기댔네. /긴 여름은 장기 바둑으로 소일하고 /봄맞으니 고사리순 돌네. /구름이 잠근 곳에 한 가지로 지내 /맑은 개울물은 저 혼자 흐르네. /척박한 따비밭 수어 이랑을 /비맞으며 부지런히 소로 간다네.”⁹⁾ 라고 읊었지만, 그의 만년 15년은 동량재로 버려진 실의와 울분의 나날이었다고 하겠다. 벽촌에 깊이 숨어 名哲保身하는 몸이었지만 絕俗할 수 없는 선비정신은 도리어 문학으로 승화시켜 나갔으니, 67세인 1619년에는 〈農家月令〉을 지어 農事指針書로 남기며 “우리 말로 번역하여 愚夫愚婦로 하여금 역시 쉽게 알도록 하였다.”¹⁰⁾ 게다가 泰村은 南石亭으로 은거한 이후부터 濟世安民을 염두에 두고 〈叢話〉 192話を 저술하였으니, 이는 단순한 상층계급의 破閑·戲謔의 자료로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탱하는 서민대중으로부터 위정자에 이르기까지 務實과 經世의 教科書의 자료를 제공하려 했던 것이라 하겠다. 남다른 재능과 器局을 지녔으면서도 나라에 크게 쓰인 바 되지는 못하였지만, 朝野에 관계없이 救國一念으로 일관하여 71세(1623년·仁祖元年)를 일기로 草洞에서 영면하였으니, 泰村은 實學者로서 官吏로서 文人으로서 儒家理念 구현에

8) 泰村은 南人系 출신이며, 이 당시 李彦迪·李滉의 文廟從祀를 놓고 鄭仁弘이 중심이 된 大北派와의 심각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음.

9) 「泰村集」卷二, 〈草洞晩卜〉, “深居草洞畔 無事日憑欄消夏碁局足 當春薇蕨生 雲鎖同棲息 溪流任獨清 薄田畚數畝 帶雨勸牛耕”

10) 「泰村集」卷三, 〈農家月令序〉, “翻以諺譯 令愚夫愚婦 各得易知”라 하였고, 이 번역본은 일설하였음.

생애를 바친 조선 중기의 선각자적 선비였다 하겠다. 泰村의 생애는 제 1기(修學期), 제2기(牧民期), 제3기(隱居著述期)로 요약할 수 있으며 遺著의 「泰村集」六卷 三冊은 1898년에 간행되었다.

2. 〈叢話〉의 著述 및 體裁

泰村의 〈叢話〉는, 「泰村集」卷三《雜著》중에 〈叢話〉二題가 있는데 전후 각 14話와 3話로 총 17話가 실렸고, 卷四《效噦雜記上》중의 〈叢話〉에 81話, 卷五《效噦雜記下》중의 〈餘話〉¹¹⁾에 94話가 수록되어 총 192話다. 〈叢話〉는 주로 《效噦雜記》에 수록되었는데 이 雜記는 19세기 후반에 출간된 「稗林」第七輯에도 수록되었다. 이 책은, 「說聞瑣錄」(曹伸), 「筆苑雜記」(徐居正)등을 수록해 96種 266卷 169冊의 방질로, 日記・隱聞瑣記・漫錄體의 기록물들로 野史가 주류를 이루어 국문학사에 서는 隨筆나지 記錄文學의인 價値를 부여할 수 있다.¹²⁾ 泰村은 〈叢話〉를 저술한 동기나 목적을 직접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叢話〉192話가 주로 《效噦雜記》에 실린 것을 보면 그가 선배들이 남긴 稗史類¹³⁾를 본받으려 했음을 알수 있다. 곧, ‘西施가 쩡그리니 나도 쩡그린다’는 고사에서 생긴 效噦이란 말로 標題를 삼은 것부터가 그 사실을 암시해 주었다. 더구나, 卷五 第52話¹⁴⁾는 朴處繪의 酒量에 얽힌 일화인데, “이는 家世로 서로 전하던 말이나 筆苑雜記에는 단지 그 대장만 기록한 까닭에 그 빠지고 간략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록한다.”¹⁵⁾는 말로서도 선

11) 〈餘話〉를 〈叢話〉의 餘話로 본다.

12)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國語國文學辭典」, 신구문화사, 1979, 「稗林」條

13) 稗史集으로는 李仁老의 「破閑集」(1260年刊), 崔滋의 「補閑集」(1254年刊), 李齊賢의 「樸翁稗說」(1343年刊), 徐居正의 「筆苑雜記」(1487年刊), 成俔의 「傳齋叢話」(1525年刊), 許筠(1551~1558)의 「海東野言」을 비롯하여 「稗林」에 96種과 「大東野乘」에 59種 등, 黃玹(1855~1910)의 「梅泉野錄」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14) 「泰村集」卷5, 《效噦雜記下》, 〈叢話〉의 줄임임. 다음의 것도 같음.

15) “此家世相傳之言 而筆苑雜記 只舉其概 故錄之以補其闕略耳”

배들의 稗史類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泰村의 〈叢話〉들은 선배의 것을 再引用한 경우는 거의 없고, 話題를 거의가 저자가 직접 견문(간혹 史書를 참고한 것은 있음)한 생활 주변의 것들이다.

泰村의 것보다 먼저 간행된 稗史類集의 저술 목적은 크게 二分할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역사적이거나 특정인의 견해)을 修正・補完하려는 목적은 공통적이나 그 효용성에 있어서는 보다 흥미의 자료¹⁶⁾ 제공쪽이거나 교화의 자료¹⁷⁾ 제공 중 어느 쪽에 관심을 더 기울였는가 하는 차이는 있다 하겠다. 그러나 稗史類集의 저자는 자신이 稗官의 구실을 한다는 생각과 단순한 破閑거리가 아닌 世敎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저술의식을 갖고 있었으니 이 점은 대체로 후대로 오면서 더 짙은 것 같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泰村의 〈叢話〉192話는 전적으로 敎化・警世의 자료로서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南石亭 은거 이후의 시로 보이는 卷1의 〈傷時用前韻〉에서 “세상 일 어찌 말로 다 하랴/놀라 기막힐 일 자주 들리는 걸./벼슬아치는 다 겁쟁이들이요/임금을 보필할 대신조차 없구료./좋은 계책 늘 펼 길 없어 근심하고/무너진 기강 붙들지 못해 한스럽네./기우는 것 받치는 첫째 방법은/의당히 동량재를 얻음에 있네.”¹⁸⁾라고 하였으니, 泰村이 만년에 〈叢話〉를 저술한 목적이 儒家理念

16) 崔滋·李相寶 譯,《補閑集》「韓國名著大全」,大洋書籍,1982. 上卷 第一話에서, “그저 잡다한 글을 모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제공해 보려는 것이지 훌륭한 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였고, 李齊賢도 위의 책 「櫟翁稗說」 序文에서 “돌이켜 보니 자질그래한 글을 즐겨 써 놓았으니 알차지 못하고 비천함이 피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적은 글을 稗說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17) 金安老,「希樂堂稿」,卷八,《雜著》〈龍泉談寂記〉自序에서, “或曰稗官小說 亦足資辯博而綴遺缺 職編摩者之所必採 豈能終稅以自私耶”라 하였고, 徐居正,《筆苑雜記》,「大東野乘」卷3, 민족문화추진회, 1971, 表沿沫의 序文에는, “대저 筆談은 林下에서 듣고 본 것을 말한 것이요, 言行錄은 명신의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 이 책은 이 둘을 합한 것이니, 어찌 搜神雜俎 등의 책과 같이 기괴한 일을 들추어서 본 것이 많고 넓음을 자랑하여, 이야기거리가 되기에만 그치는 것과 같으리오.”라고 하였으며, 「大東野乘」卷一·二의 《儒齊叢話》跋文에서도 대개 《筆苑雜記》序와 같은 주지를 보이고 있다.

실현으로서의 濟世安民에의 一助를 문장에다 의탁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叢話〉의 저작 연대는 그 시종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평소에 견문한 바를 스스로 解釋・評價하여 世教의 자료로 남기려 한 점으로 보아, 벼슬에서 물러나 南石亭으로 은거한 뒤인 1609년(光海元年) 57세 이후부터 집필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그 몇 증거를 보면, 「泰村集」卷三 第14話는 壬申年(1572년) 가을 進士初試에 응시하였다가 선비들로부터 악랄한 질시를 받고 곤욕을 차렸던 회고담으로 이야기 끝에다가 “오히려 남에게 발설하지 못한 지 40여 년이 되었다.”¹⁹⁾라고 하였으니, 壬申年으로부터 40여년 뒤는 1612년 이후가 된다. 이 시기는, 金直哉의 誣獄이 일어나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때로 泰村은 그 때 草洞으로 깊이 숨은 무렵이었다. 또한, 卷四의 第31話는 太宗雨에 얽힌 일화로 끝에다 ‘乙卯年’이라 밝혔으니, 이 해는 63세였던 1615년으로 역시 草洞時節이다. 끝으로, 卷四의 第19話는 養蠶의 요결 두 가지를 밝힌 글로, 이 글은 1619년에 작성된 〈農家月令〉‘三月清明條’의 것과 일치²⁰⁾하는 것으로 보아 泰村의 〈叢話〉가 주로 南石亭 은거 이후 草洞에서 완성된 것임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叢話〉192話는 題材別이거나 主題別의 구분이 없을 뿐 아니라, 小題目도 없으며 일화의 끝에는 거의 저자의 寸評이 붙어 있어 각 일화들은 작가의식을 드러내는 예증물이라 할 수 있다. 일화의 대부분은 200字 내외의 단편들이며 간혹 400字에 이르는 것도 없진 않다. 더구나, 각

18) 「泰村集」卷1, 〈傷時用前韻〉, “世事何堪說 頻聞寒簷來 登壇皆怯懦 調鼎乏鹽梅 長策愁難振 頻綱恨未擡 扶顛第一義 宜得棟樑材”

19) “猶未向人說道者 四十餘年矣”

20) 卷四 第19話에는, “七八月之間 取桑葉 曝乾作末 以細篩篩之 儲於瓮中 多多不妨 若桑未生葉而蠶退 則取其末而使微濕 仍以飼蠶可也”라 했는데 〈農家月令〉三月清明條에서도 “如桑未生葉而蠶退 則用前秋桑葉作末者 和水令濕以飼蠶 則蠶遂其生也”라 하였음.

일화의 소재들이 王이나 大臣들의 것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저자 주변에서 견문한 최근의 것들이란 특수성도 있다. 요약하면, 泰村이 〈叢話〉를 저술한 목적이 破閑 戲謔거리로서 흥미 제공을 하려 했다가보다 世教·警世·改革을 전제로 한 儒家理念 具現資料를 제공하려 한데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저자의 독자의식은 서민 대중으로부터 위정자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뻗어있으며, 청소년을 의식한 童話 내지 童話的 逸話가 50여 편이나 된다는 사실은 泰村 〈叢話〉의 한 특징이라고도 하겠다. 이에, 〈叢話〉 192話의 내용을 作家意識面에서 네 유형의 성격으로 나누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卷 三		卷 四	卷 五	計
性 格	話 數	話 數	話 數	
實 證 性	8	22	43	73
警 戒 性	5	6	5	16
褒 貶 性	2	32(6)	14(9)	48(15)
批 判 性	2	15	23	40
計	17	81	94	192

() 안은 貶임

2. 〈叢話〉의 性格

1) 實事求是的 實證性

사실에 토대를 두고 그 실상을 파악함에 실증성을 중요시한 일화들은 모두 74話인데 이는 전체 이야기의 38%에 해당된다. 儒家의 實學이 주로 形而上學論의인데 비해, 泰村은 科學的·合理的 思考로 사물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를 實證 및 考證을 통해 내린 점에서 보면 그는 조선 후기의 實學의 基本性格²¹⁾을 고루 갖춘 선구적 실학자였다고 하겠다. 본항에 속하는 일화들이, 실증과 고증을 바탕으로 한 說理的이고 解說的

이라 전달하고 설득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는 만큼 순수 문학성이 결여된 일화들이 많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重隨筆다운 일화나 評論 내지 論說文에 가까운 일화들에서 발견에의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을 실제 작품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먼저, 역사 민속적 사실에 대한 실증성을 들 수 있다. 卷三 前〈叢話〉第13話는 한민족이 흰옷(白衣)을 즐겨 입게 된 사실을 실증적으로 고증한 일화다. 즉, 우리의 본색은 方位色(方色)으로 보면 東方이라 青色을 입어야 마땅함에도 白衣를 즐겨 입게 된 것이 箕子의 東來로 인한 것이라 하였다.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을 때는 周의 영향권하에 있었지만 흰것(白)을 숭상하던 故國 殷²¹⁾의 제도를 따랐을 것임을 동시대의 微子가 殷制度를 답습한 사실로 증거를 삼고서는,

“東方이 箕子를 얻는 것은 만고에 일대 다행이다. 은덕이 뼈골에 스미고 덕택이 후세에 유전하여, 사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공경하기를 神明처럼 하면서 어찌 그가 좋아하는 것에 반하여 方色을 좇으랴?”²³⁾

고 반문하고, 나아가 좋은 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전통 풍습으로 지켜 온 유풍을, 後漢의 郭泰로부터 비롯된 林宗巾²⁴⁾을 본떠 ‘折巾角’하는 일과 晉의 謝安을 본떠 선비가 왕의 부름에라도 함부로 나가가지 않는 일 등으로 조선인이 흰옷을 전통적으로 고수한 類와 같은 것이라고 실증하

21) 金泳鎬, 《實學思想的 發展》,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1975, pp.169~185 참조. 조선 후기 실학의 기본성격을, 客觀的 自然觀·社會的 實踐儒理·民族의 主體意識을 들었는데 이같은 사실은 각 일화를 고구함에서 드러나리라 본다.

22) 「十八史略」, 殷, 湯王이 七年大旱에 기도할 때 “素車白馬 以身爲犧牲”했다는 기록으로도 殷나라가 白을 숭상했음을 알 수 있다.

23) “東方之得箕子 萬古之一大幸 而德浹于骨 澤流于後 愛知如父母 敬之如神明 安得反其所好而從方色”

24) 郭泰의 字는 林宗인데, 巾을 쓰고 가다 버를 만나 한 角이 꺾인 것을 보고 당시 선비들이 전의 뿔을 꺾어 쓰게 되었다는 고사가 있음.

었다. 이 일화에 드러난 작가의식은 단순한 모방에서가 아닌, 민족적 주체의식으로서 흰옷을 입게 되었음을 실증하면서 역사·문화·민족성을 종합적으로 그 실증의 배경으로 삼았다. 이는 후대의 崔南善이 우리 민족이 백의를 선호한 배경을 태양 숭배로 인한 신앙적 차원에서 고증하려 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하겠다.²⁵⁾ 卷四 第42話에서도 돋보이는 작가의식을 볼 수 있으니, 중국이 張燈行事를 정월 보름에 하고 그네타기를 한식에 하는 데 비해 우리 나라는 4월 8일과 5월 5일에 각각 하는 이유를 기후 조건이 중국과 다른 까닭에 풍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였다. 이는, 문화생성의 환경론적인 실증으로 역시 저자의 주체의식을 엿보게 하였다. 이같은 일화들은 독자층이 어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층에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다음은, 역사도 날조될 수 있다는 실증적 일화들이 있다. 卷五 第31話는 禍王을 辛旽의 자식이라 함은 잘못된 일이라 반증하였다. 먼저, 南孝溫이 〈詠吉治隱詩〉에서 “達可身事二姓主”라 한 것은 미안한 일이라 전제하고, 圃隱(字遠可)은 물론 治隱이 僞朝인 줄 알면서 벼슬 살았을 리는 없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우왕이 신돈의 자식이란 누명에 죽으면서도 “왕씨는 본디 龍孫이라 겨드랑이 밑에 반드시 누른 비늘 두 쪽이 있다 하고 옷을 벗어 보여 주었다.”²⁶⁾는 전설을 인용해 우왕의 王氏血統을 두둔하고, “당시의 사필은 아마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²⁷⁾고 하였다. 卷五 第58話 역시 앞의 일화와 주지가 비슷한데, 1555년(明宗10年) 호남 지방에 왜구가 침범하였을 때 장렬히 순국한 것으로 알려졌던 長興知府가 聞慶 四佛山에 중으로 변신해 나타났던 사실을 그곳의 중으로부터 직접 듣고 기록해 주었다.

25)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三星美術文化財團出版部, 1972. p. 72

26) “王氏本龍孫 故兩腋下 例有黃鱗二甲 仍解衣示”

27) “當時史筆 恐不足信也”

다음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거나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게 한 일화들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예는 卷三 前〈叢話〉第1話의 註解가 그릇됨을 실증한 것을 비롯해 第2·3·4話가 같은 유이며, 후자의 예로서는 나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실증하였는데 卷三 後〈叢話〉第3話가 그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비는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이라 죽이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저 나비란 놈은 곤충이 늙어 화한 것으로 꽃이나 잎 사이를 날으는 것은 씨(種)를 쓸기 위해 날아다닌다고 전제하고,

“내가 어려서 나비가 앉았던 곳을 살펴 보았는데 반드시 알이 있었다. 이는 곧 대소 악충의 근거가 되는 것인 즉 나비를 죽인다고 어찌 죄가 되랴. 만약 佛說로 말할지라도 자비를 베풀 것이 유독 나비뿐이겠는가? 까닭에 나는, 속담으로 전하는 말이 세속의 망론이 되고 꽃을 탐한다는 말에 시인조차 실상을 잃게 되었다고 본다.”²⁸⁾

라고 결론 지었다. 나비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체험으로써 깨뜨리고 있다. 사실은 사실대로 파악하고 인지하려는 실증적 합리적인 학자의 예리한 해석과 문제 제기에 독자는 발견에의 놀라움마저 느낄 수 있었다. 이같은 주지의 일화는 卷四 第23話에서 蝗(누리, 메뚜기과의 곤충)의 모습을 확정지은 일에서나, 卷四 第79話에서 尙州 咸昌 儉湖(공갈못·恭儉池)에 얹힌 龍耕說話(용갈이 설화)의 실상을 밝힌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삼한 시대에 축조된 이 못은 동방의 큰 못(吾東巨浸)으로서, 매년 겨울이면 얼음이 언 후에 반드시 얼음이 깨지는 곳이 생기게 되는데 그 형상이 마치 밧고랑(溝澮)을 갈아 놓은 것 같았다. 못 가운데서 못둑까지 뻗친 이 고랑은 아무리 추위도 다시는 얼지 않으므로 俗傳에 용갈이(龍耕)라 일컫고, 또 그 터진 縱橫闊狹으로써 이듬해 豐

28) “余於少時 驗蝶坐處 以有其卵 此即大小蛭虫根抵 然則殺蝶者 奚罪焉 若以佛說言之 則可慈悲者 非獨蝶也 故余以諺傳爲世俗之妄論 而以貪芳爲試人之失實也”

凶을 짐치기도 하였다. 이같은 전설에 대해 泰村은, “내 생각에는, 물이 얼 시기에 陽氣가 물 밑에 잠겼다가 얼음이 얼면 양기가 통할 수 없게 되어 반드시 한 곳이 터지게 되는데, 양기가 다 이곳을 통해 발산되는 까닭에 다시는 얼음이 얼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용갈이 설화를 부정하였다. 어떤 이와와 대화 형식을 취한 이 일화는, 우리 나라의 다른 큰 못(延安南大地)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있다고 고증함에, 논리가 정연하고 과학적이며도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신비의 베일을 벗겨 놓았다. 신화의 베일을 벗겨가는 것이 학문이라면 泰村의 학문태도는 확실히 實事求是의인 考證學에서는 선구였다고 하겠다.³⁰⁾ 그러나, 卷四 第30話와 같은 일화는, 두류산 서북쪽에 위치한 君子寺의 미나리 눈에 개구리가 없는 일, 안동 성내에는 모기가 없는 일, 상주 사불산에는 풀이 없는 일 등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는 “대저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는 것도 많다.”³¹⁾라고 하여, 인간 지혜의 한계성을 솔직히 시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화들의 독자는 兒童에게까지 확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털끝만큼도 虛를 용납지 않는 저자의 實學精神을 선명히 드러내 보인 일화들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물에 대한 이치를 인지로서는 불가해 하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존재함을 실증해 보인 일화들도 많다. 卷四의 〈叢話〉에서만도 夢事, 兆朕, 死事, 移葬, 異蹟, 觀相 등에 얹힌 일화가

29) “愚以爲涸寒之節 陽氣伏于受底 水合則氣得通透 必坳于一處 而陽其皆種此發散 故不復更永耳”

30) 金泳鎬, 《實學思想의 勃興》, 「韓國史」14, 國史편찬위원회, 1975, pp.166~168 참조. 明末・清初의 黃宗義(1610~1695), 顧炎武(1613~1682) 등이 강력한 민족의식 및 현실개혁의식으로서 실학사상을 전개하였고, 梁啓超는 清代 考證學의 업적 5개 항 중에서 簡書의 辨證, 史學, 地理學 등에 대한 고증 업적을 특기하였는데, 泰村의 학문적 자세가 이에 준하며, 실학의 선구로 보는 李睟光(1563~1628) 보다도 먼저 실학에 눈떴음을 볼 수 있다.

31) “大抵物理 多不可曉”

12話나 된다. 범인의 지혜로서는 해석하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같은 사실을 하나같이 황당무계하고 괴탄한 일로만은 도외시할 수도 없다는 문제제기라고도 하겠다. 그 몇 예를 보면, 卷四 第25話는 문장에 능했던 李嶸이 꿈에 上帝로부터 玉樓의 重修記文을 지으란 명을 받고 夭死한 일화요, 卷四 第26話에서는 임란을 예고한 조짐들을 모았는데, 壬午年(1582년)에는 영덕 해변에 靑白雀이 무리를 나누어 싸우다가 많은 사망자를 내었으며 辛卯年(1591년)에는 영해 등지의 해변에 億萬의 개미떼가 바다를 건너온 사실을 예로 들고, 전자는 임란에 교전할 조짐을, 후자는 왜구가 건너올 조짐을 보여 준 것이라 전제하고 촌평을 가하되 “하늘 마음은 仁愛하여 재난을 보임이 심히 밝았으나, 직무에 태만하고 안일한 지 오래라, 도외시하다 끝내는 도탄에 떨어졌으니 통탄할 일이 아닌가!”³²⁾라고, 위정자들의 태만과 무지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실증에만 그치지 않고 실증한 사실을 利用厚生에 제공하려 한 일화들도 많은데, 卷四 第19話의 養蠶要訣, 卷55話의 穀類播種法, 卷五 第66話의 解魚毒法, 第67話의 牛禁食物, 第82話의 痘症特效藥 등은 저자가 체험한 실증물로써 노소에 관계없이 유익한 상식을 제공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껏 살핀 바를 요약하면, 실사구시적 실증을 중요시했거나 이용후생의 자료 제공에 역점을 두었거나 간에, 이들 일화들의 소재는 다 저자가 직접 견문한 생활 주변의 인간사나 자연현상들로서 神奇高遠한 것은 거의 없다. 泰村의 일화는, 실증적·고증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고 본질에 가깝도록 해석 비판하여 그 실상을 보이거나 문제를 제기시켜 준 만큼 사색을 요하는 重隨筆이 없는 것은 아니나 거의가 論說 評論에 가까운 기록문학적 가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단

32) “天心仁愛 示災深明 而恬憍一久 置之度外 終敗塗地 可勝歎哉”

순한 사실을 전달 이상으로 잘못 된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발견에의 기쁨이 있고, 독자층이 청소년으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특징도 있다 하겠다. 특히, 淸의 實事求是의인 考證學이 우리 나라에 널리 퍼지기 전에, 사물의 진실을 추구함에 철두철미한 實證·考證을 피하려 한 점은 조선조 후기의 실학은 自生的 바탕 위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다. 한 마디로, 泰村의 〈叢話〉 일부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진실을 추구하려는 實事求是의 實證性을 중요시한 일화들로, 태촌은 한국 실학사상 선구적 위치에 놓인 선비임도 확인시켜 주었다.³³⁾ 태촌의 실학자적 입장은 다음 항들의 일화에서도 일관됨을 먼저 밝혀 둔다.

2) 世敎的 警戒性

세상을 교화시키려는 경계성을 띤 일화들은 총 16話다. 이는, 다음에 논의할 개혁이 전제된 濟世의 批判性을 지닌 일화들이 보다 깊은 고발성·풍자성을 지닌 데 비해, 깨우침에 주안점을 둔 일화들이다. 전자가 대사회적이라면 후자는 대개인적이란 차이가 있다 하겠다.

선비의 처세술을 경계한 일화부터 보면, 卷三 前〈叢話〉第6話나 第9話가 그것들인데, 第9話는 “재주없는 사람이 제일 편하다”³⁴⁾는 속담을 자신의 체험으로써 실증하였다. 즉, 남보다 뛰어난 재능과 경륜을 지니고도 無才人처럼 자처하여 外官末職을 전전하면서도 선비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벼슬을 탐하고 名利를 추구하여 한 때의 영화를 누리던 선비

33) 李佑成, 《實學研究序說》, 「實學入門」, 일조각, 1982, p.15 참조. 실학을 磻溪 柳馨遠(1622~1673)으로부터 비롯된 17세기 이후의 星湖 李瀾(1681~1763)이 계승한 經世致用派(제1기),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이르러 燕岩 朴趾源(1737~1805)이 전개한 利用厚生派(제2기), 19세기에 전개된 金正喜(1786~1856)의 實事求是派(제3기)였다는 이론에 의하면 泰村은 논리적인 이론으로서 실학을 전개했다기보다 문학으로써 그 선구적 길을 개척하였다고 할 수 있다.

34) “諺謂無才人第一安排”

들이 끝내는 화그물에 걸려 죽거나 유배당하는 액운은 면하였다고 하였다. 난세에 선비처신을 경계한 일화다. 卷三 後〈叢話〉第1話도 禁人騎馬에 얽힌 두 사례로 선비의 처신을 경계하였다. 당상관이나 臺諫이 아니면 양반이라도 상민이 말을 탄 채 자기 앞을 못 지나게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데도 금인기마는 일반인에게까지 상례화되었다. 첫 사례는, 동향인 진사 金彦建이 말을 탄 채 자기 앞을 지나는 상민을 보고도 짐짓 눈감아 준 이야기다. 수일 뒤 말을 타고 지났던 상민이 갑자기 발병하여 임종에 자식들에게, 그날 김진사가 나에게 벌을 가했던들 너희들은 내 죽음을 반드시 그의 탓으로 돌리고 검시를 요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례의 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몸을 作作(시체를 임검하고 뜯어맞추던 하인)의 손에 맡길 것이 틀림없으니, 김진사는 나에게 은인이라, 獐網 두 개를 償恩品으로 드리라고 유언하였다. 이와는 달리 趙斯文은 도리어 材力過人한 기마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봉육한 사례로써 선비의 평소 처신을 대비적으로 경계하였다. 이같은 일화는, 표면적인 경계 이상의, 당시 사회악의 일면에 대한 고발성과 인물에 대한 포폄성도 내면에는 감추었다고 하겠다. 卷四 第6話는 童話로서도 훌륭한 사냥꾼에 얽힌 일화다. 같은 마을의 禹氏 성을 가진 사냥꾼이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 큰 범(大虎)이 멧돼지(猪)를 잡아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틈을 노리던 표범(豹)이 급습하여 큰 범의 목을 물어 죽였다. 그제서야 사냥꾼은 표범을 쏘아 잡아 일거삼득하였다. 泰村은 이 사실을 두고, “아, 범과 표범은 적에게 밝지 못하였다. 범은 그 용맹만 믿고 멧돼지 먹는데 정신을 빼앗겨 표범이 줄지에 급습함을 알지 못했으니 죽음을 면치 못함도 마땅치 않는가? 이는 螳螂窺蟬의 고사와 아주 흡사하다.”³⁵⁾라고, 비평하였다. 목전의 이익에 정신이 팔려 치책에 재앙이 있음도 모르는 위인들의 처세를 겨냥한 경계요 비평이라 하겠다.

또한, 왕을 보필하는 신하의 자세를 경계한 일화도 많았는데, 卷四

第40話는 鄭昆壽가 경연에서 왕에게 規諫한 일화다. 왕이 경연에서 강
 관에게 여러 재상의 우열을 논하라 할 때에 윤곤수가 슬기롭게 왕을 규
 간하였다. 즉, 옛날에 한 노인이 두 소를 매어 밭을 가는데 지나던 손
 이 주인에게 어느 소가 더 나으냐고 물었다. 주인은 한참만에 손의 귀
 에다 대고 왼쪽 놈이 낫다고 대답하자, 그 손이 무엇 때문에 꺾속말로
 까지 하느냐고 물었다. 노인이 대답하기를, 소는 우리 집의 애양물이라
 비록 지각은 없으나 어찌 눈 앞에서 우열을 논하라! 하였다든 얘기를
 하자, 왕도 그 規諫에 탄복하였다는 일화다. 왕을 보필하는 신하의 도
 리가 어떠한지 할 것인지를 우의적으로 경계하였을 뿐 아니라, 왕의 처
 신도 동시에 경계하였으니 왕이 재상을 면전에서 평가함은 첫째, 왕이
 신하를 모른다, 둘째, 신하를 불신한다, 셋째, 편견이 있다. 넷째, 불화
 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경각시킨 것이라 하겠다. 이와 주지가 같은 卷五
 第79話도, 왕이 간관 李俊民에게 세상에 신선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
 준민이 그는 元混이라 전제하고는, “신이 일찌기 山壇祭를 올릴 때 제
 관이 된 元某를 보니 얼굴이 홍안에다 윤기가 났으며 걸음걸이가 날쌔
 었습니다. 나이가 90에 이르렀는데도 능히 이같으니 이가 곧 신선이 아
 니겠습니까. 또한, 이 늙은 신하는 음식을 조절하고 嗜欲을 삼갔으니
 이 또한 仙術이라, 그가 곧 地上仙임에 틀림없습니다.”³⁶⁾라고 아뢰자
 왕도 웃었다고 한다. 신선술에 미혹한 왕을 규간하는 신하의 재치가 돌
 보인다. 위의 두 일화는 諫官의 褒揚에 그 주지가 있는 게 아니라, 君
 臣의 처신을 보다 차원 높게 경계한 일화로 역시 한 편의 동화라고도

35) “噫 虎豹之不敵明矣 而虎恃其猛 耽於食猪 不覺玄豹之猝至 其不免也宜哉 此與螳螂黃雀之
 事 正相似” 螳螂黃雀之事는 螳螂窺蟬이란 고사성어를 낳았는데, 매미는 우느라 버마재비
 가 이름을 모르고 버마재비는 매미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 새가 자신을 엿보고 있는 줄
 도 모른다는 고사에서 생긴 말로, 목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뒤에 닥치는 재화를 아지
 못한다는 뜻이 되었다.

36) “臣曾於山壇之祭 見元某爲祭官 容貌紅潤 步履輕捷 年將九十 乃能如此 此乃仙人也 且此
 老臣節飲食慎嗜欲 此亦仙術也 其爲地仙也宜矣 上笑之”

하겠다.

처세를 경계시킨 일화와는 다소 다른 경계성을 띤 일화에 卷四 第17話가 있다. 觀相을 소재로 한 일화로, 李忠武公의 관상을 福將이 아니라 한 判相이 그르다고 하였다. 즉, 현실적인 五福觀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못되니, 李忠武公이야 말로 死而不死하고 名流萬古할 名將이 아니냐는 반증이다. 진실한 生命이 무엇인가를 경각시킨 일화와 하겠다. 또한, 卷五 第16話는 名利를 공유하기란 어려운 것임을 경계한 일화로, 營吏가 生員 進士가 됨은 본인에게는 명예로운 일이나, 아내로서는 白牌를 동맹이치며 ‘이 물건이 집안에 들고부터는 죽 조차도 못 먹게 되었다’고 탄식하였으며, 譯官으로서 당상에 오름은 영광이긴 하나, 朝天의 기회가 줄어 財利는 도리어 줄었으므로 동료들로부터 놀림을 당한 사실로써, 名利는 한 사람이 공유하기 어려운 것임을 경각시키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世敎의 警戒性을 띤 일화들은 주로 題材가 처세에 관한 것이 주류며, 그 주제는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인가를 깨우치게 하려는 데 있었다 하겠다. 경계성 자체의 의미를 확대하면, 실증성·표범성·비판성과의 획일적 구분이 어려움도 사실이며, 특히 사람을 경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둔 일화들인 만큼 독자층이 노소에 국한될 것이 아니어서 동화가 많은 점도 그 특징이라 하겠다.

3) 傳記의 褒貶性

한 인간의 생애 중 특정 행적을 부각시켜 그것을 褒揚하거나 貶斥한 일화로 전자가 48話, 후자에 15話가 있다. 이같은 일화들은 전부가 사람의 애기로 그 재제는 왕과 관리의 치적, 특수한 인간의 재능, 孝烈忠節, 庶子의 身分上昇事 등으로 다양했다. 이에, 포양성을 띤 일화의 예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孝子를 포양한 일화는 卷三 後〈叢話〉第2話의 李公信兄弟, 第16話

權巽容의 효행 등인데, 후자 권효자의 경우는 모친의 산소를 이장할 때 잘못 하였다니 꿈에 모친이 나타나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至誠感天의 기이한 일을 특기하였다. 이들 효자는 물론 忠僕 등의 일화도 다 저자와 동향인이거나 직접 확인한 무명의 사람들을 포양한 데서 저자는 자신이 稗官의 입장에 섰음을 보여 주었다.

왕의 仁德과 슬기를 포양함이 많은데, 卷四 第5話는 中宗의 人愛를, 第31話는 太宗을 부각시키었다. 卷五 第62話는, 성종 때에 막내 아들을 사랑하여 온 재산을 그에게 주고 형에게 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그 형이 刑部에다 소송을 제기하니 형부에서 왕에게 알렸다. 성종이 讞狀(죄를 논한 문권)에다 “세상 사람이 단지 국화를 사랑해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꽃 핀 뒤엔 다시 필 꽃이 더 없기 때문이다.”³⁷⁾라고 쓰고, 명하여 아버지가 한 일을 고지치 못하게 하였다. 이 말 속에서는, 꽃으로서 오상고절로는 국화만한 것이 없듯이 형들보다 막내의 재목됨을 알아 그에게 가문을 의탁한 아버지의 깊은 뜻을 왕으로서도 고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림이 심히 깊다고 하겠다. 卷五 第63話도 성종의 명판결사인데, 어떤 백성에게 맏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재산을 모두 사위에게만 주고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초상화 한 폭만 준 일이 있었다. 아들이 장성하여 형부에 소송을 제기하니 성종이 그 초상화를 바치라 명하였다. 초상화를 받아 벽에 걸고 보니, 열 손가락이 다 밑으로 내려져 마치 무엇을 가리키는 모습같았다. 왕은 초상화를 내려서 그 여백에다 재산을 자녀 공히 나누어 주라는 글을 지었다. 이 명령을 좇아 재산을 나누어 준 판결에 대해 저자는, “聖明의 默識야 말로 보통인의 천견으로서는 미칠 바가 못된다.”³⁸⁾라고 왕의 식견과 슬기로운을 포양하였다. 이같은 포양은, 전자는 아버지 되는 사람의 심려

37) “世人不是貪愛菊 此花開後更無花”

38) “聖明之默識 非尋常見之所及也”

를 헤아린 판결이요, 후자는 딸과 사위의 간계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진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名君·名判決이라 할 수 있으니, 이 같은 단편적인 일화로서도 성종의 사람됨을 극명하게 부각시켰다고 하겠다. 아울러, 두 일화는 아동들에게도 유용한 개안의 자료로서 충분하다.

다음은 명판들의 명판결을 보기로 한다. 卷五 第21話는 도둑맞은 종이를 찾아준 고을 원(朱應元)의 기지에 찬 판결이다. 한 종이 장수가 밤에 도둑을 맞고 이튿날 고을 원에게 찾아줄 것을 호소했다. 원은, 도둑맞을 때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종이 장수는 소나무 한 그루만 있었다고 답하자, 원은 그에게 소나무를 베어 오라고 명령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온 고을 사람들이 관정으로 몰려 들었고, 종이 장수는 소나무를 베어 왔으나, 원은 소나무에게 무엇을 물으라고 호통을 치고는 관문을 닫고 말았다. 그리고는, 군중을 향해 무단으로 관정을 침입한 소란죄를 씌우되 벌 대신 종이로 속죄할 수 있게 하고는 반드시 종이에 성명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순식간에 온 고을의 종이가 답지하였고, 종이 장수는 그 속에서 자기의 종이를 발견하여 도둑을 잡았다. 卷五 第88話 역시 宋期忠 목사가 내린 명판결이다. 주민 삼형제가 재산으로 인해 송사가 났다. 이유는, 아버지가 재산을 종말이에게만 주고 두 형에게는 분급치 않았던 까닭이다. 송목사는 짐짓 고루 나누어 주지 않은 아버지의 처사를 나무라며 쪼으로 인형을 만들어 ‘訟者之父’라 명명했다. 그런 뒤, 말이에게 그 草人을 끌고 오라하니 거리낌없이 끌고 왔다. 중형 역시 큰형과 같이 했다. 끝으로 막내에게 시키니, “벼룩 허수아비나 이름을 아버지라 하였은 즉 어찌 끌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내 차마 할 수 없습니다.”³⁹⁾ 하고 거절하였다. 그제서야 송목사는 두 형을 심히 꾸짖고 축출하였다는 일화다. 실로 목민관의 명판결이라 할 수

39) “雖是芻蕘 名之曰父 則豈提曳之乎 茲則吾所不忍也”

있으며, 아동의 교육에도 적절한 동화라도 하겠다. 이런 일화는 송목사만이 아니라 자신의 도리를 다한 막내를 동시를 포양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貶斥한 일화를 살피기로 한다. 이들 일화의 제제는 誣告・貪官・起禍・不德・僞善・僞忠 등이며, 소인배로부터 고관대작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도 다양하다. 卷四 第13話는 天嶺太守였던 저자와 尙州牧使였던 黃洛 간의 실화인데, 황목사가 泰村에게 대우산을 청해 만들어 보냈더니, 정교하지 못하다고 다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군에는 한 괴상한 일이 있는데, 누더기옷을 걸친 거지가 동냥을 하되 거친 쌀을 주면 좋아하는 기색이 없는데도 그 자루를 보면 한 움큼의 좁쌀도 없었다. 아지 못할래라, 귀주에도 이같은 일이 있는지요?”⁴⁰⁾라고 거절하였다. 황목사는 답신에서 거지란 말이 심하고도 심하구나 하며 분해 했다는 일화다. 권세에 굴하지 않은 선비의 기개가 볼만할 뿐 아니라, 그 불의를 貶斥함이 엄중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卷四 第38話는 乙巳士禍를 일으킨 장본인인 尹元衡을 貶斥함에 誣諧者 金行의 입을 빌어 하였다. 즉, 尹이 죽어서 中宗・明宗을 찾아뵈었으나 질책만 당하고, 文定王后(친누나)를 同氣라 찾았다가 조상에게 죄지은 사람이라 배척당하고, 애첩 蘭貞은 心服의 농간으로 아예 만나지도 못하였다는 일화다. 亂臣을 嚴斥함이 저승에까지 미치었다.

살핀 바를 요약하면, 褒揚에서는 그 대상이 천민으로부터 왕에 이르는 반면, 貶斥의 대상은 주로 사대부로 고관이 많았다. 한 인간을 褒貶하여 鑑戒의 자료를 남기려는 데 작가의식은 있었으며, 이는 곧 패관의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라 할 수 있다.

40) “吾都有一怪事 懸鵝丐者內乞糧 給以糲米則有不豫色 搜其囊則無一掬粟矣 部知貴州 亦有此事否”

4) 濟世的 批判性

제세안민의 儒家理念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드러난 비판성을 띤 일화는 총 40話다. 그 제재는, 人材登用の 失策, 貪官汚吏, 惡習制度, 虛僞事, 末世의 世態, 奢侈, 風水說, 朋黨 등의 순으로, 주로 대 사회적·국가적인 것과의 관련 일화다. 이에, 몇 예를 살펴려니와 먼저 인재등용의 모순을 고발한 卷四 第15話부터 본다.

“정유재란 1597년)에 호남인이 영남으로 유리할 때 피리를 불어 동냥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부는 사람은 소득이 아주 적고 잘 못 부는 사람이 도리어 많았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던가. 대개 잘 부는 사람의 피리소리는 듣기가 좋아 동냥주기를 일부러 늦추어 그를 오래 머물게 했고, 잘 못 부는 사람의 피리소리는 듣기가 싫어 빨리 주어서 속히 가도록 했던 까닭에, 잘 부는 사람은 들리는 곳이 적고, 잘 못 부는 사람은 들리는 곳이 많아서 소득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생긴 것도 이상할 게 없다. 이는 莊周의 山木之說(莊子の 篇名, 산의 나무는 재목이 되고 안 되고 간에 화를 당하기는 일 반이란 설)과 같은 유형으로, 오늘날 벼슬살이가 이같으니 가히 손뼉을 치며 웃을 만하다.”⁴¹⁾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寓意로서 냉소적인 비판이요 고발이다. 더 나아가 할 사람이 더 못한 현실, 그것은 저자 당대 세태의 한 단면상이다. 이같은 일화는, 왕을 포함한 위정자를 향한 조소와 질책이 말 밖에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저자 말년(광해조) 大北의 전횡으로 인해 간신이

41) “丁酉之變 湖南地人 流移于嶺南 有吹笛乞糴人 善吹者所得鮮少 不善吹者反優 其故何哉 蓋善吹者 喜其悅耳而給之姑緩 冀其久留 不善吹者 惡其嗚嘶 而與之必亟 冀其速去 故善吹者歷抵者少 不善者經過處多 宜所得有多寡之異也 此與莊周所謂山木之說相類 今世仕宦亦如此 可拍手笑也”

득세하고 王孫 名賢조차도 性命을 보존하기 힘들었던 봉당정치의 폐습⁴²⁾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하겠다. 특히, 광해조에 인용등용이 얼마나 무절제했단가는, 卷三 第12話의 知製敎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 30여 인이나 되었지만 하나같이 不學無才하여 기롱하는 시가 조야에 유포되었던 사실이나, 卷五 第26話의 비적임자를 임용하였기에 지방민조차 협조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사실로서도 알 수 있다. 또한 卷五 第7話는, 광해가 당하직을 문벌 중심으로 제배함으로써 백 리 땅 郡縣을 맡은 수령이 너무 늙었거나 반대로 쫓비린 내 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도,

“문득 재물을 움켜쥐는 손을 함부로 놀려, 백성의 재물은 이미 고갈했는데도 오히려 착취에만 급급하여 원성이 사방에서 일어도 돌보지 않고, 대관은 그 소리를 듣고도 접어들며 안렴사는 알고도 못 들은 체 한다. 어째선가? 淳風이 죽어버리고 公道는 쓴 듯 없어져 서로가 보복을 일삼는 까닭에서다. 저 맹자의 ‘남의 부형을 죽이면 그 사람 역시 남의 부형을 죽인다’는 말과 같은 연고로 꼭 참고 날을 지내고 답답한 채 때를 보낼 뿐인데도 왕왕 문책을 당하는 사람은 권세있는 음란에 불과하니 액운을 거듭 만나는 이는 선비들이다. 세상 일이 이 같으니 백성인들 어찌 근하지 않으랴!”⁴³⁾

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인재등용에의 실책뿐 아니라 나라의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四民이 한 가지로 도탄에 빠지게 된 광해조 실정에 대한 고발장이다. 卷四 第37話는 벼슬길에 오른 경대부들조차 權富를 추구하여 知止知足할 줄을 몰라 끝내는, 가벼운 자는 人面獸身의 도깨비같은 인간이 되고, 중한 자는 형륙을 당하고야 마는 위인들을 신랄히 비판하

42) 大北으로 인한 옥사는 1613년의 癸丑獄事로 인해 永昌大君의 庶人, 閔妃廢母의 참극이 일어났고, 1611년에는 李彦迪·李滉의 문묘종사를 鄭仁弘이 논박함으로써 봉당의 폐해는 심각해졌다.

43) “遵肆穫金之手 民膏已竭而猶浚 怨讟朋興而不顧 臺諫聞之置度外 按廉地之如不聞 其故何哉 爲淳風死去 公道掃如 互相報復 如孟子所謂殺人之父兄 人亦殺其父兄 故含容度日 憫默過時 往往塞責者 不過勢去之蔭官 厄重之斯文也 時事若此 民安得不困乎”

였으며, 특히 인재등용의 관문이 되는 과거제의 문란상을 卷四 第76話, 卷五 第3話 등에서 엄히 비판하였는데, 卷四 第74話는 科擧의 循私之弊를 지나라하게 고발하였다.

“오늘날은 권신이 함부로 하여 관작을 자기것인 양 여겨, 친구들을 모아 주고 어린 사람들까지 주어 안으로는 百司와 밖으로는 州縣에 이르기까지 다 蔭官인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며, 심지어 科擧가 공정치 못한데 이르러서도 또한 문벌이 한미한 선비는 바랄 바가 못 된다. 공적있는 가문들이 관작과 과거를 모조리 차지했으니 先朝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만도 아니니 탄식해 무엇하리!”⁴⁴⁾

또한, 제도의 모순과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고발·비판한 일화도 많은데 그 중 卷四 第44話의 전문을 보면,

“얼음은 겨울의 하찮은 물건이나 끼치는 해는 적잖다. 商山(註·尙州古號) 한 州만 예로 보더라도 氷庫修理價가 一夫當 四匹이요 얼음을 배어 防納(곡물을 돈으로 대납)하는 값이 一夫當 八匹이라 이같은 세금은 상주의 貢賦(공물과 세금) 중 거의 반이나 넘는다. 이 악법을 지은 사람은 金庭睦牧使인데 晉昌君(著者註·姜綏牧使)이 부임하여 그 폐단을 제법 혁파하였더니 이어서 부임한 목사가 재목이 못 되어, 좋은 규례를 버리고 폐정을 다시 이었다. 어떤 사람이 얼음에 대한 시를 짓되, ‘천부의 모습은 겨울에 玉으로 몸을 삼아/그지 없이 깨끗해 본디 한 점의 티끌도 없었네./세상의 법도 점점 희미해지니 변괴도 많아/도리어 세속 따라 眞人도 만들어지네’라고 하였다.”⁴⁵⁾

44) “今則權臣者擅 視官爵己私 收拾親舊 施及童穉 內而白司 外而州縣 皆是蔭官 非特此也 至於科擧不公 亦非寒素希望 率爲門蔭之淵藪 視先朝不啻霄壤 可勝嘆哉”

45) “氷是寒月賤物 而胎害不少 以商山一州觀之 凌陰修理之價 一夫四匹 伐氷防納之價 一夫八匹 校之貢賦 殆過其半 作傳者金庭睦也 晉昌(著者註 姜綏)來代 稍革其弊 繼之者不良 去善規述弊政 有人作咏一絶曰 裏形寒月玉爲身 淨盡元無一點塵 世道漸微多變怪 却隨流俗作眞人”

는 詩意만으로도 세상에 公道란 찾을 곳이 없게 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이 외에도 卷五 第61話는, 햇곡식을 바치되 융통성없이 일정 기간을 정하므로써 미처 곡식이 익지 않으면 다른 지방에서 사느라 곡가가 앙등하고, 간교한 상인은 묵은 곡식을 가공하되 離婁의 神眼으로도 분간 못하게 하여, 백성은 물가고에 시달리고 심지어 王은 神主를 속이는 우를 범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卷四 第58話에서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위정자를 우의적으로 비판하였다. 즉, 저자가 어렸을 때 집안 아저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들도 어려서 들은 이야기 라고 했다. 하루는 남루를 걸치고 동냥하는 노인이 저자의 마을에 이르렀다. 어떤 이가 불쌍히 여겨 술 한 사발을 주니 선 채로 다 마시어, 더할 수 있느냐 하니 그러겠노라 하여 다시 한 사발을 더 주니 거뜬히 마시고는 그제서야 스스로 춤추며 노래하였는데 노랫소리가 범상치 않았다. 저자는 이 사람을 異人이라 여겨 그 노래에 知韻⁴⁶⁾하였는데, “망망한 우주 안의 / 일도 많은 조물옹이여, / 친고의 영웅은 어디다 두었는가 / 별로 네게 금곡주수어 배를 가하리.”라고 읊었다. 난세를 제도할 영웅을 끝내 내리지 않는 조물옹에게까지 별주를 내리겠다고 하였다. 영웅을 갈구하는 저자의 간절한 심정은 곧 하늘까지 가득찬 백성의 怨望임을 독자는 느낄 수 있다.

다음은, 童話 두 편을 통해 그것들이 지닌 비판성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卷四 卷62話는 두더지의 婚事 이야기다. 옛날에, 미녀 딸을 둔 두더지가 처음은 해(日)에게 청혼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음은 달(月)에게, 구름(雲)에게, 바람(風)에게, 돌부처(石佛)에게 차례로 거절당하여 결국은 두더지끼리 결혼했다는 전래 동화다.⁴⁷⁾ 해는 달에게, 달은 구름

46) 「泰村集」 卷一의 〈續和老翁歌〉는, 茫茫宇宙內 多事造物翁 千古英雄置何處 罰汝金谷酒數同이라 하였다.

47) 전래 동화로 들은 바는 있으나 그 출전을 파악치 못했음. 「大東野乘」 소개의 패사집으로 태촌의 〈총화〉 이전의 것에서는 우화가 발견되지 않음.

에게 등으로 서로가 자기 재능이 상대만 못하다고 양보함으로써 두더지는 두더지와 결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 우화를 저자는 촌평에서 “이 때문에 세상의 딸 둔 사라이 구혼하되, 바라는 바가 너무 높으나 결국 상대에게 돌아가고 마는 것을 일컬어 두더지혼인(鼯鼠婚姻)이라 한다”⁴⁸⁾라고 하였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는 평범한 이치를 재확인시킨 동화로, 본질 외적 요소로 결혼이 이루어지던 당시 사회의 모순이 오늘을 조명시키기에도 시대성을 초월해 그 생명력을 지님을 볼 수 있다. 卷五 第1話 역시 전래 동화로 늙은 쥐와 젊은 쥐와의 우화다. 옛날, 물건을 훔치는 데 신묘한 늙은 쥐(老鼠)가 살았다. 그러나, 노년에는 기력이 쇠하여 몸소 도둑질할 수 없게 되자, 젊은 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절물을 노략 먹었다. 이러기를 오래하자, 젊은 쥐들이 그에게서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절물을 노략주지 않게 되어 분함을 머금었다. 하루는 마을 부인이 음식을 솥에다 넣고 그 뚜껑에다 돌을 얹어 놓아 훔칠 방도가 없게 되었다. 젊은 쥐들이 꾀가 다 하자 늙은 쥐에게 가서 물었으나 거절하여, 저들이 백배사죄하니 그제서야 늙은 쥐는, 솔밭 세 곳 중 한 곳을 파면 솔뚜껑이 기울어져 쉽게 얻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 뒤로는 노소 쥐들이 화목하게 공생했다는 우화로, 고려장할 노인을 손자가 차마 못하고 감추어 주었다가 국사에 관계되는 큰 계교를 얻음으로써 고려장이 폐지되었다는 우화와도 주지가 일치된다. 저자는 우화의 끝에도 촌평을 가하되,

“아, 미물 또한 저렇거늘 항차 사람에게 있으랴! 李信의 계교가 王剪에 미치지 못하고 武賢의 꾀가 充國만 못했던 것은 老少의 다름에서지 한갓 用兵術에서만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치국의 도리도 老成한 이들의 지혜를 얻는 일보다 나을 게 없으니, 秦穆의 이른바 ‘늙은이에게 물어서 하면 허물될

48) “以此世有生女求婚 意望太高 而辛歸上敎者謂之鼯鼠婚姻”

일이 없다'고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권을 잡은 노신들이 어른으로서 수수방관만 하며 혀를 동여맨 채 바른 말은 못하며도 한낱 태평같은 소리만 지껄이니, 도리어 쓸데없는 墓木에 불과하단 꾸지람을 받을 뿐이다. 노소의 취들조차 저갈거늘 사람이 저들만 못하니 탄식할 노릇이다.”⁴⁹⁾

라고, 제세안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나라의 원로들이 묘목같은 무용물에 불과하다고 질책하였다. 亡國病은 人災에 있음을 통렬히 비판하는데 우화가 원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역시 시대를 초월해 현실감을 지닌 일화라 하겠다.

卷四 第67話는 魂을 판 인간을 엄히 폄적하였는데, 먼저 晋나라의 名琴家 戴安道가 왕의 부름에도 “내 王門을 위해 광대가 될 수는 없다”⁵⁰⁾하고 가야금을 부수어 버렸다는 고사를 들고는, 仁同의 진사 張某의 행동과 대비하였다. 장진사는 배법 음률에 밝고 노래를 잘하였는데, 경상 감사가 선산에서 鄉試를 보일 때 상주 성주 두 고을의 기녀들까지 다 동원되었다. 시험을 파하고 주연을 베풀었을 때 장진사는 자진해 잔치의 말석을 차지하였다가 노래를 시키니 부끄럽게 생각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였다. 저자는 촌평을 통해 “그를 破琴人에다 비교하면 하늘과 땅 사이일 뿐만 아니다. 그런즉, 戴安道の 죄인인 것이다. 당일 내가 목도한 까닭에 이에 기록한다”⁵¹⁾라 하고, 명예와 절도는 씻은 듯이 없는 위인이라고 폄적하였다. 이같은 일화의 작가의식은, 일차적으로 張進士를 폄적하는 데 있었으나 그보다도 藝術魂・名譽를 파는 즉, 虛를 위해 實을 파는 張進士類의 위인들을

49) “噫 物亦然矣 況於人乎 李信之不及王剪 武賢之讓不如充國 老少之異也 非徒用兵爲然 治國之道 亦無踰老成 秦穆所謂詢茲黃髮則罔所愆 是也 然而斯今 國柄付之 黃吻 而耆舊旁觀 結舌不言 縱有鳳鳴之語 反被木拱之諍 相鼠若彼 人而不不如 可勝歎哉”

50) “吾不能爲王門伶人”

51) “其視破琴人 不啻天壤焉 然則戴安之罪也 當日目睹 故記之”

비판하는 데 더 집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비판 외에도, 卷五 第8話는 사치의 병폐를 비판하였는데 “한갓 政令의 말단에만 구구할 뿐,

금령을 내리고도 저들은 도리어 그것을 좋아하니 백성이 어찌 따르랴!”⁵²⁾ 고, 반문하였다. 이 역시 시대를 초월해 저자의 목소리는 생명력을 지닌다. 卷五 第23話도 사치로 인한 조세가중을 비판하였으며, 말세적 징후가 도처에서 발생하는 데도 왕을 포함한 위정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현실을 비판한 일화에는 卷五 第20話와 第74話 등이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제세적인 비판성을 지닌 일화들의 작가의식은, 제세안민을 책임진 위정자(왕을 포함)의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고 비판하여 그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함은 물론 나아가 그것들을 개혁하려는데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비판된 제재가 다 국사와 관련되었다는 특성도 있다.

Ⅲ. 맺 는 말

이상에서 살핀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 泰村 高尚顔(1551~1623)은 조선조 중기를 살다간 實學者요 官吏며 文人이었다. 그 생애는 修學期(1세~24세), 牧民期(25세~56세), 隱居 著述期(57세~71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벼슬길에서나 초야에 묻혀서나 우국일념 하나로 제세안민의 선비정신을 실천함은 물론 문학을 통해 실현하려 하였다.

둘째, 〈叢話〉 192話는 저자의 인생관·사회관·사물관·국가관을 담은 결정체들로 그 주제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었으며, 제재

52) “徒區區於政令之末 所令反其所好 而民豈從乎”

는 인간사에서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고, 그들 소재는 기존 패사류의 것을 재인용함이 없이 거의 저자 당대의 체험으로서 逸事와 逸話였다. 이따라서, 소재나 제재가 현실감이 있고 친근감이 있었으며 주제가 침신하고 진솔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 생명감이 있었다.

셋째, 〈叢話〉 192話を 작가의식면에서 實事求是의 實證性, 世敎의 警戒性, 傳記의 褒貶性, 濟世의 批判性을 띤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실사구시적 실증성을 띤 일화들은 실증이나 고증을 통해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려 하였으므로 虛를 부정하고 實을 중히 여겼으며, 僞를 배격하고 眞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泰村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물관은, 淸朝 實學의 영향없이 經世致用的이고 利用厚生の이며 考證學的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점에서, 태촌은 조선조 후기 실학의 선구자적 위치에 설 뿐 아니라 〈叢話〉 192話は 조선조 후기 실학의 자생적 배경론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 하겠다. 한 마디로, 실사구시적 실증성을 띤 작품들을 통해 독자는, 진실 발견에의 기쁨, 교과서적 가치발견, 독자층의 광범위함, 선구적 실학자와의 만남 등을 맛볼 수 있다 하겠다. 세교적 경계성을 띤 일화들은 주로 제재가 처세에 치중되었으며, 대사회적이기보다는 대개인적인 경계·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주제의식이 있어 가장 교훈적이었다. 이같은 일화들에서 독자는 슬기로운 삶의 발견이나 동화적인 일화가 많다는 특색을 지적할 수 있다. 전기적 포핍성을 띤 일화들의 주인공은 전부가 사람이었으며, 褒揚에서는 그 대상이 천민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고, 인간성 회복 내지 존중이란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貶斥에서는 대상이 주로 위정자(고관)들이어서 言外에는 대사회적 비판성까지를 띤 것도 있었다. 표품은 공히 저자가 패관의 입장에서 내린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었으며, 독자는 이런 일화들에서 인간 발견에의 기쁨을 맛보고 역시 童話가 많은데 주목하게 된다. 제세적 비판성을 띤 일화들은 저자의 과감한 현

실(주로 광해조) 비판과 고발 정신을 목도할 수 있으며 사회개혁을 열구하는 선비의 분노까지를 맛보게 하였다. 더구나, 일화들의 주제가 보편성에 닿아 오늘날에도 생명력을 지님으로 작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래 동화의 적절한 응용은 저자의 작가다운 점을 실증해 주기도 하였다.

넷째, 특히 〈叢話〉 192話 가운데는 童話나 童話의인 逸事·逸話가 50여편이나 되어 다른 패사집에 비해 저자의 독자의식이 독특함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저자가 차세대 주인공들인 아동(청소년)들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절실했던가를 여실히 보여 줌이며, 경서 외에는 읽을 거리가 없었던 조선조 아동들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하였으니 이는 泰村이 문학의 효용성을 누구보다도 극대화시킨 선구자임도 알려 주었다. 이런 점에서 泰村의 〈叢話〉는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란 특장을 지녀, 그 문학의 생명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도 할 만하다.

끝으로, 泰村의 〈叢話〉 자체의 가치성이나 문학사적 위치는 보다 많은 선후배의 패사집을 통해 그 수수관계 및 문학성 고찰을 통해서만 밝혀질 일이며, 泰村의 實學史的 位置 역시 연구방법을 달리 해야 정립될 것이란 사실을 첨기해 둔다.